



재정운영 효율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주계약자공동도급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뿐 아니라 건설업 측면에서도 장점을 많이 가진 제도이다. 현재 국가계약보다 활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더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계약에서도 적용범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발주자 측면에서는 효율적 재정운영, 하도급문제 해결 수단,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수직적인 도급방식에서 하도급자로 생산에 참여할 때보다 더 많은 공사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부계약자를 하도급자가 아닌 원도급자와 같은 위치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며, 현실적으로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이므로 경영상태와 시공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부적격 하도급자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부계약자의 직접 시공의무화와 기성대가 직접 수령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 시공의무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주민인 근로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기성대가 직접 수령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건설업 측면에서는 건설업의 상생발전, 건설업 구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건설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규모 기업,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



박 광 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영상태·시공능력 평가

부적격업체 퇴출에 유용

임금체불 방지는 물론

기술위주 공정경쟁 유도

업자 간 상생발전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델로서 주계약자공동도급만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부적격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격심사 과정에서 우선 경영 상태를 충족하여야 하며, 시공경험과 시공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을 가진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확대 적용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주요 효과와 부수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효과는 공사품질 제고와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 하도급 폐단 해결, 입찰환경 개선, 기술 경재 유도 등이며 부수적인 효과는 임금체불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기술경쟁 위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지원 방안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지역제한입찰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즉 발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근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지역제한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 필요하다.

둘째, 구성원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상대적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역량이 중요한 방식이다. 제도가 활성화되어 장점을 극대화 하려면 부계약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구성원 탈퇴 시 주계약자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규정 폐지가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주계약자 1인, 부계약자 1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넷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파를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incentive)을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에서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의 기준수요액 산정과정에서 보정수요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건수 확대를 포함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활용의 필요성이 크며 이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3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를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